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부강의 등 신고 면제 대상 확대〉

▣ 이현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43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외부강의 등 신고면제 대상 확대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헌승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21.
3. 회 부 일 : 2025. 3. 2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수수하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서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하여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공직 또는 공적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경험을 공익 목적으로 전파하는 강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교육기관 등을 추가하여 공직자등의 공적 목적의 외부강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 Ⅲ. 검토의견 : 외부강의 등 신고면제 대상 확대

- 개정안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서면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교육기관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                                                                                                                                     |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
| ② 공직자들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br>-----<br>-----<br>-----<br>-----<br>-----<br>-----<br>-----제2<br>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br>해당하는-----<br>-----. |
| ③ ~ ⑤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10조제2항은 공직자등<sup>1)</sup>이 사례금을 수수하는 외부강의등<sup>2)</sup>을 할 경우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sup>3)</sup>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sup>4)5)</sup>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li> </ul> </li> <li>－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li> </ul> </li> </ul> |
|---------------------------------------------------------------------------------------------------------------------------------------------------------------------------------------------------------------------------------------------------------------------------------------------------------------------------------------------------------------------------------------|

○ 같은 조 제1항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sup>6)</sup>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우회적 금품 수수 등을 방지함으로써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5) 신고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 개정안은 서면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범위에 기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직자윤리법」상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교육기관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직자등이 공직 또는 공적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경험을 공익 목적으로 전파하는 강의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려는 것으로<sup>7)</sup>, 그 입법취지는 일응 긍정적임.

□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동 조항의 입법취지 및 같은 법의 제정취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조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만 제외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만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외부강의등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금은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예산지침을 적용받고 있어 사례금 한도의 관리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임.<sup>8)</sup>

○ 따라서 공직유관단체 등의 외부강의 요청 시 공통적인 예산지침을 적용 또는 준하여 적용하는지, 과도한 사례금을 지급할 우려는 없는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행법의 제정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7) 개정안은 ‘공직자등’의 범위에서 ‘언론사’는 제외하고 있음.

8) 청탁금지법 해설집, 국민권익위원회, 2024

- 현행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sup>9)</sup>
- 개정안의 외부강의등 신고 배제 대상에는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학교 법인 등이 포함되는바, 이들 기관은 현행법의 신고 배제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 대등하지 않거나 열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존재함.
-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셋째, 현행 조항이 공직자등이 공적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경험을 공익 목적으로 전파하는 강의에 참여하는 것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동 법 제정 시에는 모든 외부강의등을 사전에 서면신고(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이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사례금 수수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을 감안하여 2019년 11월 현행법과 같이 ‘사례금을 받은’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적으로 신고’ 하도록 개정된 바 있음.<sup>10)</sup>

- 현행 조항은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등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사전이 아닌 사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자등의 우회적인 금품 수수를 방지하는데에 있어 과도한 규제인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사후 신고 기간이 짧아 신고 기간을 도과할 우려가 크다면, 사후 신고 제도 자체는 그 순기능에 비추어 유지하되, 이를 현실화하여 신고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정안은 공적 목적의 외부강의 활성화, 현행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의 목적은 정당한 권원을 벗어나는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우회적 금품 수수 등을 방지하는 것이고, 현행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공통적인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10) 개정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

|              |
|--------------|
| 문 의 처        |
| 02)6788-5110 |